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653호 2022년 7월 18일(월)

경 상 북 도

■ 예 규

- 경상북도 국외훈련업무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경상북도 예규 제1564호) 6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고 시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13호) 9

■ 공 고

-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315호) 11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316호) 19
-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경상북도 공고 제2022-1324호) 24

시 군

■ 고 시

- 경주 건천2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2-130호) 27
- 안동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2-119호) 44

-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2-127호) 47
- 영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2-69호) 5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2-93호) 54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2-94호) 56
-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2-95호) 58
-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2-68호) 72
- 봉화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봉화군 고시 제2022-104호) 183
- 봉화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문화시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봉화군 고시 제2022-105호) 190
- 봉화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봉화군 고시 제2022-106호) 193

■ 공 고

- 안동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2-1444호) 197
-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2-1348호) 200

- 청도 군계획시설사업(고수제5어린이공원)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청도군 공고 제2022-999호) 201

기 타

■ 공 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납부
통지서」 공시송달
(구미소방서 공고 제2022-3호) 205
- 「위험물 주유취급소 시정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경주소방서 공고 제2022-8호) 210
- 「위험물 주유취급소 사용정지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경주소방서 공고 제2022-9호) 212



경 상 북 도

예 규

경상북도 국외훈련업무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7월 18일

경상북도 예규 제1564호

경상북도 국외훈련업무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경상북도 국외훈련업무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외훈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한다.

1. 실·국장급 공무원
2. 공공정책, 행정, 교육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13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하천 (개운천)	교량 개체	〈개운교〉 L=28.0m, B=10.5m (영구 815㎡) (일시 820㎡)	경상북도 상주시 개운동 605-13번 지 일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장 (도시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024.12.31까지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315호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에 따라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특구 개요

- 명 칭 :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 위 치 : 경북 안동시, 경산시 일원 8개 지역
- 면 적 : 421,685.94m²
- 지정목적 : 현재 규제에 막혀 사용할 수 없는 HEMP를 활용하여 CBD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 산업 육성

2. 특구 변경계획(안) 주요내용

○ 특구 지정기간 연장

특구명	(당초) 지정기간	(변경) 기간연장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2020.8.1. ~ 2024.7.31	2020.8.1. ~ 2024.11.30

- 연장 사유 : 기존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실증 연장 조치 시 24개월 실증 연장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함에 따라 특구지정기간을 규제특례 유효기간으로 조정

○ 실증특례 기간연장 : 4건

실증특례	(당초) 특례기간	(변경) 특례기간
(특례①) 산업적 수출용 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의 대마(HEMP)를 재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2020.12.01~ 2022.11.30.	2022.12.01~ 2024.11.30
(특례②) 재배한 헴프에서 CBD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 대하여 폐기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2020.12.01~ 2022.11.30	2022.12.01~ 2024.11.30
(특례③)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2020.12.01~ 2022.11.30.	2022.12.01~ 2024.11.30

실증특례	(당초) 특례기간	(변경) 특례기간
(특례④) 헴프의 재배부터 CBD 제조·수출까지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헴프 소지·운반·보관 또는 관리 행위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	2020.12.01~ 2022.11.30.	2022.12.01~ 2024.11.30

3. 열람기간 : 2022. 7. 26.(화) ~ 2022. 8. 18.(목) 18:00까지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4.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바이오생명산업과 202호(전화: 054-880-2513)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7. 26.(화) ~ 2022. 8. 18.(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제출가능

- 주 소 : (38542)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바이오생명
산업과

- 이메일 : mooccoo@korea.kr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054-880-25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안)

□ 특구지정 개요

- (목적) 규제에 막혀 사용할 수 없는 HEMP를 활용하여 CBD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 산업 육성
- (위치·면적) 경북 안동시, 경산시 일원 8개 지역 · 421,685.94m²
- (사업자/지정기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콜마(주), (주)유한건강생활 등 35개 기업 · 기관/ '20.8~'24.11(4년 4개월)

□ 지정변경 현황

- 특구 지정기간 연장

특구명	(당초) 지정기간	(변경) 기간연장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2020.8.1. ~ 2024.7.31	2020.8.1. ~ 2024.11.30

- 실증특례 기간연장 : 4건

실증특례	(당초) 특례기간	(변경) 특례기간
(특례①) 산업적 수출용 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의 대마(HEMP)를 재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2020.12.01~ 2022.11.30.	2022.12.01~ 2024.11.30
(특례②) 재배한 헴프에서 CBD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2020.12.01~	2022.12.01~

실증특례	(당초) 특례기간	(변경) 특례기간
있도록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 대하여 폐기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2022.11.30	2024.11.30
(특례③)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2020.12.01~ 2022.11.30.	2022.12.01~ 2024.11.30
(특례④) 헴프의 재배부터 CBD 제조·수출까지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헴프 소지·운반·보관 또는 관리 행위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	2020.12.01~ 2022.11.30.	2022.12.01~ 2024.11.30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경상북도 공고 제2022-1316호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계획(안)」 변경 신청을 위하여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최목적**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청취

2.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 8. 3.(수) 10:30 ~ 12:00

나. 장 소 : 안동시청 융부관 소통실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다.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 생략(공청회시 배부)

3.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주요 내용

가. 특구 지정기간 연장 : 1건

나. 실증특례 기간연장 : 4건

4. 발 표 자 : 발표 신청자, 관련 전문가 중 지명 또는 위촉

5. 공고, 열람기간, 열람장소

가. 공고기간 : 2022. 7. 18.(월) ~ 2022. 8. 18.(목)까지

나. 열람기간 : 2022. 7. 26.(화) ~ 2022. 8. 18.(목) 18:00까지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바이오생명산업과 202호 (전화: 054-880-2513)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7. 26.(화) ~ 2022. 8. 18.(목) 18:00까지

나. 제출양식 : 붙임 양식 참조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제출가능

1) 주 소 : (3854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바이오생명산업과

2) 이메일 : mooccoo@korea.kr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054-880-25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경상북도 공고 제2022-1324호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경상북도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공일자 : 2021. 7. 13.(화)

○ 제공받은 기관 : 행정안전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이용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21. 7. 1. ~ 2022. 6. 30. 기간 중 경상북도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2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2. 10월 예정)

○ 공고기간 : 2021. 7. 18.(월) ~ 2021. 7. 27.(수) / 10일간**○ 공고방법 : 경상북도 도보 및 홈페이지**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2-130호

경주 건천2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269-4번지 일원 경주 건천2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경주 건천2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269-4번지 일원

다. 면 적 : 989,683.9m²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경주시 내 산재한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 운영으로 협동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화로 경주·건천지역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구 분	기 업 명	주소 및 대표이사	비고
대표 시행사	(주)공단디앤시	○ 주소 :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803-2 5층 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남로 16(신평동) ○ 대표이사 : 이기영	
공동 시행사	(주)아이존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1118-19 ○ 대표이사 : 박희근	
	(주)리앤한	○ 주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9 ○ 대표이사 : 한창훈	
	(주)에이앤엠	○ 주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9 ○ 대표이사 : 김병선	
	(주)삼영 한스텀핑	○ 주소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146 ○ 대표이사 : 김진욱	
	(주)아크플라텍	○ 주소 :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61번지 ○ 대표이사 : 전홍식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1995년 06월 16일 ~ 2021년 12월 31일

 변경 - 1995년 06월 16일 ~ 2023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3), 목재 및 나무제품(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22), 비금속광물제품(23), 제1차금속(24),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기계 및 장비(29),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기타운송장비(31), 가구 제조업(3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3)는 세세분류상 13992(부직포 및 펠트제조업)만 해당됨

나. 업종별 배치계획

계획유치업종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계 (산업시설)	760,679.6	100.0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650.0	0.2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8,987.3	2.5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693.7	1.3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829.1	3.9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4,817.1	4.6	
24. 1차 금속 제조업	45,478.8	6.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14,456.0	1.9	

계획유치업종	면적(m ²)	구성비(%)	비고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074.7	1.4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7,158.9	39.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2,689.3	33.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743.0	2.2	
32. 가구 제조업	1,430.4	0.2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6,671.3	3.5	

다. 업종별 배치 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989,683.9	-	989,683.9	

나. 토지이용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계	989,683.9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760,679.6	76.9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650.0	0.2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8,987.3	1.9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693.7	1.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829.1	3.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4,817.1	3.5	
24. 1차 금속 제조업	45,478.8	4.6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4,456.0	1.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074.7	1.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7,158.9	30.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2,689.3	25.5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743.0	1.7	
32. 가구 제조업	1,430.4	0.2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6,671.3	2.7	
지 원 시 설 용 지	14,220.2	1.4	
지 원 시 설	14,220.2	1.4	
공 공 시 설 용 지	214,784.1	21.7	
도 로	81,623.0	8.3	
주 차 장	8,267.6	0.8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녹 지	60,695.3	6.1	
공 원	12,930.4	1.3	
수 도 시 설	3,642.7	0.4	
저 류 조 시 설	7,670.2	0.8	
폐 기 물 처 리 시 설	32,895.9	3.3	
오 · 폐 수 처 리 시 설	7,059.0	0.7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 로

(1)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14 (2)	5,221 (2,976)	81,623.0 (35,610.0)	5 (1)	2,037 (1,736)	38,720.7 (35,610.0)	6 (1)	2,403 (1,240)	32,663.2	3	781	10,239.1
중 로	8 (2)	4,136 (2,976)	71,167.8 (35,610.0)	3 (1)	1,614 (1,736)	34,243.3 (35,610.0)	2 (1)	1,741 (1,240)	26,685.4	3	781	10,239.1
소 로	6	1,085	10,455.2	2	423	4,477.4	4	662	5,977.8	-	-	-

주) ()는 사업지구(산업단지)외 진입도로

(2) 도로 결정조서

○ 산업단지 내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합계		14개소 (1개소)			5,221 (1,240)						81,623.0
기정	소계		8개소 (1개소)			4,136 (1,240)						71,167.8
기정	중로	1	1	20~ 27	보조 간선	428	용명리 748	용명리 산201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9,346.6
기정	중로	1	2	20~ 23	보조 간선	892	용명리 산288 -1	용명리 산200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18,741.8
기정	중로	1	3	20~ 20.5	보조 간선	294	용명리 산198- 1	용명리 1054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6,154.9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807	용명리 산287 -1	용명리 산201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12,218.8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934	용명리 산201	용명리 1055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14,406.2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1,240)	건천리 625	용명리 산288 -1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11-7호 (2011.2.7)	60.4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60	용명리 산279	용명리 산278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2,248.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471	용명리 760	용명리 산198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6,059.3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50	용명리 산271	용명리 산271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1,931.7
기정	소계		6개소			1,085						10,455.2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76	용명리 산198	용명리 1052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925.9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347	용명리 1084-1	용명리 산208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3,551.5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73	용명리 산200	용명리 784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1,638.9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74	용명리 산199- 3	용명리 산199 -1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1,704.4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25	용명리 산271	용명리 산273 -1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1,039.1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90	용명리 1099	용명리 산283 -4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1,595.4

※ ()는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경주시 고시 2011-7호, 2011. 2. 7)때 결정된 중로 2-5호선 관련임.

○ 산업단지 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1개소					(1,736)						(35,610)
기정	중로	1	4	20	보조 간선	(1,736)			진입 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010- 197호 (2010.5. 24)	(35,610)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8,267.6	-	8,267.6		
기정	1	노외 주차장	용명리 2571번지	2,198.6	-	2,198.6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2	노외 주차장	용명리 2591번지	1,193.6	-	1,193.6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3	노외 주차장	용명리 2615번지	2,237.4	-	2,237.4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4	노외 주차장	용명리 2580번지	2,638.0	-	2,638.0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2) 공간시설

가) 공 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12,930.4	-	12,930.4		
기정	1	공원	소공원	용명리 2566번지	8,027.3	-	8,027.3	경북도 고시 제1996-5호 (1996.1.15)	
기정	2	공원	소공원	용명리 2616번지	4,903.1	-	4,903.1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나) 녹 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개소			60,695.3	-	60,695.3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71번지	3,105.8	-	3,105.8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55번지	7,708.9	-	7,708.9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93번지	11,448.8	-	11,448.8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93번지	10,357.8	-	10,357.8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70번지	1,353.4	-	1,353.4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6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82번지	20,592.9	-	20,592.9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7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51번지	2,236.2	-	2,236.2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8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620번지	945.0	-	945.0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9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98번지	343.6	-	343.6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614번지	867.7	-	867.7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78번지	402.9	-	402.9	경상북도 고시 제2010-197호 (2010.5.24)	
기정	12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605번지	355.4	-	355.4	경상북도 고시 제2010-197호 (2010.5.24)	
기정	13	녹지	완충 녹지	용명리 2567번지	976.9	-	976.9	경상북도 고시 제2010-197호 (2010.5.24)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3,642.7	-	3,642.7		
기정	1	수도공급 설비	용명리 2552번지	3,086.3	-	3,086.3	경북도 고시 제1996-5호 (1996.1.15)	배수지
기정	2	수도공급 설비	용명리 2604번지	556.4	-	556.4	경상북도 고시 제2012-152호 (2012.5.24)	배수 시설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7,670.2	-	7,670.2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용명리 2594번지	7,670.2	-	7,670.2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저류 지

5)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32,895.9	-	32,895.9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용명리 2554번지	32,895.9	-	32,895.9	경주시 고시 제2009-3호 (2009.1.12)	

나) 오·폐수처리시설

(1) 오·폐수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7,059.0	-	7,059.0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용명리 2568번지	7,059.0	-	7,059.0	경북도 고시 제1996-5호 (1996.1.15)	

라. 용도지역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기반시설계획도 등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 수요량(㎥/일)	비고
계	3,301	
공업용수	2,780	
생활용수	521	

※ 대상지 인근의 건천읍 시가지 내로 지나가는 광역상수도 $\varnothing 300\text{mm}$ 관로에서 분기된 기존 $\varnothing 150\text{mm}$ 관로(건천1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통하여 본 산업단지 배수 시설 까지 $\varnothing 100\text{mm}$ 관로(공급가능용량 : $1,805\text{m}^3/\text{일}$)로 공급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오·폐수발생량(m ³ /일)	비고
계	1,583	
산 업 폐 수	1,174	
생 활 오 수	409	

※ 본 산업단지 내 오·폐수처리는 2016년 경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오·폐수발생량 600m³/일 이내만 오수관로(D400mm)를 통하여 건천하수처리장을 거쳐 압송관로(D150mm)로 화천하수처리장으로 인입 가능하며, 추가 발생하는 오·폐수는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가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단지 내 오수관로(∅300mm ~ 400mm)를 통하여 처리 또는 전량위탁 처리토록 계획

※ 추후 산업단지의 오·폐수 발생량 증가로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할 시 산업단지 내의 오·폐수처리시설 부지에 처리시설을 마련(처리용량 : 2,200m³/일)

다.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 발생량(ton/일)	비고
계	825.008	
생활 폐기물	4.077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820.931 (307.976)	

※ 지정, 가연성폐기물 : 전량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불연성 폐기물 :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에서 매립 처리 하고, 향후 10년이상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라.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력수요(kWh)	비고
계	27,458	
지원시설용지	55	
산업시설용지	27,404	

마. 통신공급계획

구 분	통신 수요량(회선)	비고
계	2,533	
산업시설용	2,240	
지원시설용	285	
기 타	8	

8.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

구 분	사업량	개략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20,045	
진입도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0m, L=1,736m • 교량 1개소(B=20m, L=30m) 포함 	7,895	
용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관로 D=200mm, L=1,500m • 배수지 설치 : 2,500톤당 7억원 • 저수조 및 가업장 설치 : 9억(2,500톤/일 기준) 	1,650	
폐수처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폐수처리장(7,059.0m²) 	10,500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안동시 고시 제2022-119호

안동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일원에 안동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명 칭 : 안동시청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결정면적 : 36,297m²
- 금회 사업시행면적 : 2,611m²

1) 공사현황

- 가. 토 공 : 흙깎기 6,426m³, 흙쌓기 769m³, 터파기 672m³, 되메우기 306m³,
사토 309m³(보강토 5,060m³ 사용)
- 나. 우 수 공 : 우수관(D300~D400) L=195m, L형측구 L=376m, 우수받이 18개소
- 다. 오 수 공 : 오수관(D200) L=84.5m, 오수받이 6개소
- 라. 구조물공 : 보강토옹벽 L=119m, 옹벽블록 L=77m
- 마.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 A=1,764.0m²
- 바. 부 대 공 : 1식
- 사. 주차면수 : 36면(자동차 28면, 소형자동차 8면)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시장(교통행정과)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5.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계				28,974	2,611				
1	명륜동	344	대	25,160	283	-	안동시	-	
2	명륜동	342-6	임	3,814	2,328	-	안동시	-	

안동시 고시 제2022-127호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안동시 옥동 920-5번지 상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안 동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주거 밀집지역 내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계층이 여가를 즐기고 놀이를 할 수 있는 녹색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자 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5	옥동9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경북 안동시 옥동 920-5번지	2,376.60	-	2,376.60	경상북도 고시 제2002-416호 (2002.12.30.)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조성계획 총괄 조서

시설명	부 지 면 적 (㎡)			구성비(%)		건 축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체면적	2,376.60	2,376.60	-	100.00	100.00	-	-	-	-	-
시설면적	1,250.00	1,386.10	증)136.10	52.60	58.32	-	-	-	-	-
도로 및 광장	-	397.30	증)397.30	-	16.71	-	-	-	-	-
휴양시설	466.00	66.50	감)399.50	19.61	2.80	-	-	-	-	-
유희시설	176.00	875.00	증)699.00	7.41	36.82	-	-	-	-	-
운동시설	608.00	42.30	감)565.70	25.58	1.78					
편익시설	-	5.00	증)5.00	-	0.21					
녹지 및 기타	1,126.60	990.50	감)136.10	47.40	41.68	-	-	-	-	-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기 정		변 경		건축 면적 (㎡)	연 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2,376.60	100.00	2,376.60	100.00			시설율 58.32%
도로 및 광장	소 계				-	-	397.3	16.71			증) 397.3㎡
				도로	-	-	397.3	16.71			
휴양 시설	소 계				466.0	19.61	66.5	2.80			감) 399.5㎡
		1	점토 조립 블록 포장	휴게 쉼터1	451.0	19.61	48.7	2.05			
		2	이형 판석 포장	휴게 쉼터 2	15.0	-	17.8	0.75			
	1-1		평의자		6개소	-	-	-			
	1-2		그늘집		1개소	-	-	-			
유희 시설	소 계				176.0	7.41	875.0	36.82			증) 699.0㎡
		2	고무조 립 블럭포 장	놀이 터	176.0	7.41	875.0	36.82			
	2-1		조합 놀이대		1개소	-	-	-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기 정		변 경		건축 면적 (㎡)	연 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운동 시설	소 계				608.0	25.58	42.30	1.78			감) 565.7㎡
			우레탄 포장		608.0	25.58	-	-			
	3-1	3	농구대	체력 단련 시설	2개소	-	42.30	1.78			
조경 시설	4-1		입구문 주 장식벽		1개소	-	-	-			
	4-2		화강석 식수대		1개소	-	-	-			
	4-3		플랜터		45m	-	-	-			
편의 시설	소 계				-	-	5.0	0.21			증) 5.0㎡
		4		음수 대			5.0	0.21			
녹지 및 기타	소 계				1,126.6	47.40	990.5	41.68			감) 136.1㎡
			녹지	녹지	1,126.6	47.40	990.5	41.68			녹지율 41.68%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관계도서는 안동시청 공원녹지과(☎054-840-54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고시 제2022-69호

영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녹전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중계 펌프장	영천시 녹전동 244번지 일원	583	증) 11	594	2021. 7. 19.	면적 증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T.054-330-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2-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71-1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산 시 장

1. 사업명칭 :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상방공원피에프브이 대표 김창수/(주)호반건설 대표 박철희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15길 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71-1번지 일원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분양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51,163㎡ ○ 연 면 적 : 176,754.7406㎡ ○ 건설규모 : 27~35층, 8개동, 공동주택 1,0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16,947,297천원	

5. 사업기간 : 2022. 11. 01. ~ 2026. 12. 31.(50개월)

6. 다른 법률의 의제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신고

7. 관계서류는 경산시청 건축과(810-55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가. 열람기간 : 2022.07.20.~2024.09.19.(2개월)

경산시 고시 제2022-9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65-3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산 시 장

1. 사업명칭 : 상방공원 호반써밋 2단지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상방공원피에프브이 대표 김창수/(주)호반건설 대표 박철희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15길 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65-3번지 일원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분양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57,549㎡ ○ 연 면 적 : 198,022,418㎡ ○ 건설규모 : 27~37층, 7개동, 공동주택 1,1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79,147,998천원	

5. 사업기간 : 2022. 11. 01. ~ 2026. 12. 31.(50개월)

6. 다른 법률의 의제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신고

7. 관계서류는 경산시청 건축과(810-55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가. 열람기간 : 2022.07.20.~2024.09.19.(2개월)

경산시 고시 제2022-95호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중방동, 계양동 일원의 남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산 시 장

1.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가.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성비 (%)	
총 계	503,770	5,621.53	100.0	503,770	5,621.53	100.0	
시 설 종 류	소계	160,589	5,621.53	31.8	161,257	5,621.53	31.9
	도로	27,882	-	5.5	27,882	-	5.5
	조경시설	55,541	-	11.0	55,541	-	11.0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성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구성비 (%)	
휴양시설	5,709	306.72	1.1	5,709	306.72	1.1	
유희시설	5,537	35.00	1.1	5,537	35.00	1.1	
운동시설	19,203	2,800.00	3.8	19,203	2,800.00	3.8	
교양시설	22,479	2,252.81	4.5	22,479	2,252.81	4.5	
편익시설	20,492	227.00	4.1	21,160	227.00	4.2	증) 668㎡
교통시설	3,746	-	0.7	3,746	-	0.7	
녹지	342,513	-	68.1	342,513	-	68.1	
미지정	668	-	0.1	-	-	-	감) 668㎡

■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	남매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지정→ 편익시설 지정 A = 6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매근린공원 내 주차부족 문제해소를 위해 미지정 부지를 주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주차장)로 지정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폭원 (m)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비 고
총 계		62	10,230	27,882	
중로 1류	20	-	-	-	
중로 2류	1~18	1	220	1,550	
소로 1류	10	-	-	-	
소로 2류	8	2	300	2,664	
소로 3류	4~8	1	181	1,087	
	6	-	-	-	
	5	-	-	-	
	4	3	137	532	
	1~4	1	1,100	3,343	
	3~5	1	30	230	
	3	10	3,044	9,175	
	1~3	1	15	50	
	2.5	2	490	1,229	
	2	6	424	863	
	2.0~3.0	1	464	1,175	

(2) 도로조서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계				10,230	27,882				
기정	중로	2	1	1~18	220	1,550	원내간선로	삼북동12-8	삼북동12-3	
기정	소로	2	1	4~8	181	1,087	원내보조간선	계양동477-2	중방동802-75	
기정	소로	2	2	8	72	671	주진입로	중방동802-72	중방동1-1	
기정	소로	2	3	8	228	1,993	원내보조간선	중방동799-3	중방동784-3	
기정	소로	3	1	3	496	1,508	산책로	중방동121-1	계양동231-2	
기정	소로	3	5	1.5	100	162	산책로	중방동784-2	중방동773-3	
기정	소로	3	7	4	59	224	산책로	중방동658-3	중방동699-1	
기정	소로	3	9	1.5	362	543	산책로	중방동797-3	중방동773-3	
기정	소로	3	10	1.5	264	397	산책로	삼북동10	삼북동8	
기정	소로	3	11	1.5	52	83	산책로	중방동773-3	중방동773-3	
기정	소로	3	12	3	47	142	산책로	중방동784-11	중방동784-3	
기정	소로	3	13	3	154	460	산책로	중방동811-3	중방동743-5	
기정	소로	3	14	1~3	15	50	산책로	계양동642	계양동507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3	18	1.5	10	14	산책로	중방동686-14	중방동682-14	
기정	소로	3	19	3	46	137	산책로	중방동686-1	중방동682-1	
기정	소로	3	20	2.0~3.0	464	1,175	산책로	계양동213-2	계양동200-2	
기정	소로	3	21	3	1,076	3,242	산책로	계양동200-4	중방동703-8	
기정	소로	3	23	1.5	15	45	산책로	계양동465-2	계양동465-2	
기정	소로	3	25	3	469	1,385	자전거도로	계양동231-2	계양동200-2	
기정	소로	3	26	1.2	335	413	산책로	계양동463-20	계양동413-2	
기정	소로	3	27	1~4	1,100	3,343	자전거도로	계양동200-4	중방동802-84	
기정	소로	3	28	1.2	327	402	산책로	계양동463-20	계양동463-19	
기정	소로	3	29	1.2	28	38	산책로	계양동463-19	계양동463-19	
기정	소로	3	30	1.5	483	824	자전거도로	중방동702-4	중방동116-5	
기정	소로	3	31	1.5	483	667	산책로	중방도702-4	중방동116-5	
기정	소로	3	32	3	383	1,149	산책로	계양동246-15	계양동116-1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3	33	2	158	317	산책로	계양동297-2	계양동258-3	
기정	소로	3	34	2.5	251	628	산책로	계양동300-4	계양동231-2	
기정	소로	3	35	2	150	301	산책로	계양동297-2	중방동116-2	
기정	소로	3	36	2.5	239	601	산책로	계양동300-4	중방동121-1	
기정	소로	3	37	6	199	1,194	산책로	중방동779-1	중방동780-3	
기정	소로	3	38	1.5	27	45	자전거도로	중방동708-5	중방동711-1	
기정	소로	3	39	1.5	27	41	산책로	중방동708-5	중방동711-1	
기정	소로	3	40	1.5	99	149	산책로	중방동743-5	중방동744-2	
기정	소로	3	41	4	47	183	산책로	계양동642	계양동524-2	
기정	소로	3	42	3	344	1,032	산책로	중방동764	중방동802-72	
기정	소로	3	43	1.5	41	61	산책로	중방동743-5	중방동758-3	
기정	소로	3	44	1.5	20	31	산책로	중방동758-1	중방동758-1	
기정	소로	3	45	1.5	58	88	산책로	중방동811-3	중방동773-3	
기정	소로	3	46	1.5	43	70	산책로	중방동773-3	중방동760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3	47	1.5	29	45	산책로	중방동775-2	중방동775-1	
기정	소로	3	48	1.5	51	95	산책로	삼북동11-3	삼북동12-1	
기정	소로	3	49	3~5	30	230	산책로	중방동783-6	중방동784-4	
기정	소로	3	50	3	25	75	산책로	중방동784-4	중방동784-3	
기정	소로	3	51	1.5~6	202	572	산책로	중방동784-12	중방동792-4	
기정	소로	3	52	1.5	55	84	산책로	중방동743-5	중방동742	
기정	소로	3	53	1.5	20	30	산책로	중방동743-5	중방동743-5	
기정	소로	3	54	1.5	45	70	산책로	중방동782-2	중방동775-2	
기정	소로	3	55	1.5	32	95	산책로	중방동792-3	중방동784-28	
기정	소로	3	56	2	80	163	산책로	계양동246-3	계양동231-2	
기정	소로	3	57	2	9	22	산책로	계양동258-3	계양동249-5	
기정	소로	3	58	2	10	22	산책로	계양동255-3	계양동255-3	
기정	소로	3	59	4	31	125	산책로	계양동300-4	계양동301-5	
기정	소로	3	60	2	17	38	산책로	중방동120-4	중방동116-2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3	61	1.5	182	273	산책로	중방동683-2	중방동682-1	
기정	소로	3	62	1.5	127	196	산책로	중방동683-2	중방동682-10	
기정	소로	3	63	1.5	47	73	산책로	중방동682-11	중방동682-10	
기정	소로	3	64	1.5	33	52	산책로	중방동682-1	중방동684-1	
기정	소로	3	65	1.5	100	155	산책로	중방동683-1	중방동682-1	
기정	소로	3	66	1.5	65	100	산책로	중방동683-2	중방동682-1	
기정	소로	3	67	1.5	46	68	산책로	중방동682-1	중방동683-1	
기정	소로	3	68	1.5	22	33	산책로	중방동683-1	중방동683-4	
기정	소로	3	69	1.5	10	15	산책로	중방동683-4	중방동683-3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현황		503,770	5,621.53	12,895.69		
시설면적	현황			161,257				
1. 도로								
기정	계		10,230	27,882				
2. 조경시설								
기정	소계			55,541				
기정	2	소풍마당	중방동764일원	6,055				
기정	3	가로휴게광장	삼북동21-2일원	3,057				
	4	가로공원		2,720				
기정	4-1	가로공원	계양동463-11일원	2,494				
기정	4-3	가로공원	계양동515-7일원	226				
기정	6	프로그램음악 분수	계양동325일원	3,043				
기정	7	생태관찰마당	계양동470-7일원	129				
기정	34	광장	중방동777-3	3,411				
기정	37	습지	중방동686-3일원	3,663				
기정	38	자연마당	중방동685-3일원	21,196				
기정	39	수생식물생태 관찰장	계양동463-1일원	12,267				
3. 휴양시설								
기정	소계			5,709	306.72	783.48		
	8	휴게쉼터		344				
기정	8-1	휴게쉼터	계양동299-4일원	29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8-2	휴게쉼터	계양동255-3일원	28				
기정	8-3	휴게쉼터	계양동120-4	28				
기정	8-4	휴게쉼터	계양동254-3	52				
기정	8-5	휴게쉼터	계양동255-5일원	18				
기정	8-6	휴게쉼터	중방동682-11일원	65				
기정	8-7	휴게쉼터	중방동683-2일원	30				
기정	8-8	휴게쉼터	중방동683-1일원	31				
기정	8-9	휴게쉼터	중방동683-1	25				
기정	8-10	휴게쉼터	중방동682-14	38				
9		노인시설		1,970	306.72	783.48		
기정	9-1	노인정	중방동658-1일원	1,320	206.72	583.48		
기정	9-2	경로당	중방동658일원	650	100.00	200.00		
11		휴게광장		3,395				
기정	11-2	휴게광장	중방동749-2일원	172				
기정	11-3	휴게광장	중방동744-2일원	682				
기정	11-4	휴게광장	중방동746일원	500				
기정	11-5	휴게광장	계양동463-19일원	66				
기정	11-6	휴게광장	계양동463-19일원	72				
기정	11-7	휴게광장	계양동463-20일원	30				
기정	11-8	휴게광장	계양동518-4일원	136				
기정	11-9	휴게광장	계양동461-2일원	74				
기정	11-10	휴게광장	계양동463-21일원	73				
기정	11-11	휴게광장	계양동192일원	531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11-12	휴게광장	중방동743-5일원	550				
기정	11-13	휴게광장	계양동525일원	20				
기정	11-14	휴게광장	계양동758-3일원	192				
기정	11-15	휴게광장	계양동780-2일원	179				
기정	11-16	휴게광장	계양동784-11일원	118				
4.유희시설								
기정	소계			5,537	35.00	35.00		
기정	12	오감체험장		586				
기정	13	어린이놀이터	중방동682-1일원	121				
기정	14	물놀이마당	중방동703-8일원	3,382	35.00	35.00		
기정	41	어린이놀이마당	중방동796일원	1,448				
5.운동시설								
기정	소계			19,203	2,800.00	4,100.00		
기정	15	수영장	상방동2-1일원	13,425	2,700.00	4,000.00	2층	
	16	테니스장		3,111	100.00	100.00		
기정	16-1	테니스장	중방동701-5일원	3,111	100.00	100.00		
기정	17	다목적운동마당	중방동796일원	2,324				
	18	주민운동마당		343				
기정	18-2	주민운동마당	계양동231-2일원	105				
기정	18-3	주민운동마당	계양동413-2원	73				
기정	18-4	주민운동마당	계양동475-6일원	165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6. 교양시설								
기정	소계			22,479	2,252.81	7,750.21		
기정	19	도서관	계양동478-3일원	6,693	1,339.81	6,209.21		
기정	20	전통예절교육관	중방동760일원	8,430	631.00	631.00		
기정	21	교양회관	중방동750-2일원	1,420	282.00	910.00		
기정	24	세계연꽃식물원	계양동463-1일원	1,151				
기정	25	생태관찰데크	계양동470-6일원	387				
기정	26	수상데크로드	계양동463-1일원	2,594				
기정	27	수변데크	계양동254-3일원	967				
기정	40	야외공연장	계양동464일원	565				
기정	42	작은초화원	중방동782-1	272				
7. 편익시설								
기정	소계			20,492	227.00	227.00		
변경	소계			21,160	227.00	227.00		증)668㎡
기정	28	목교	계양동121-1	58				
기정	30	운영실	계양동466-1	205	170.00	170.00		
	31	주차장	(기정)	20,100				
	31	주차장	(변경)	20,768				증)668㎡
기정	31-1	주차장	계양동246-3일원	809				
기정	31-2	주차장	중방동697-3일원	12,483				
변경	31-2	주차장	중방동697-3일원	13,151				증)668㎡
기정	31-3	주차장	중방동712-7일원	1,572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31-4	주차장	중방동784-3일원	1,267				
기정	31-5	주차장	계양동567-3일원	1,522				
기정	31-6	주차장	계양동752일원	1,720				
기정	31-7	주차장	계양동477-2일원	87				
기정	31-8	주차장	중방동772-2일원	640				
기정	32	휴게음식점	중방동704-1일원	60	25.00	25.00		
	33	화장실		69	23.00	23.00		
기정	33-1	화장실	계양동518-4일원	24	9.00	9.00		
기정	33-2	화장실	계양동247-3일원	45	23.00	23.00		
8. 교통시설								
기정	소계			6,746				
	35	광장		3,688				
기정	35-2	광장	중방동686-2일원	542				
기정	35-3	광장	중방동784-20일원	2,395				
	36	진입광장		354				
기정	36-2	진입광장	중방동116-9일원	354				
기정	37	중앙광장	계양동297-2일원	455				
9. 녹지								
기정	소계		전지역	342,513				
10. 미지정								
기정	소계		중방동697-3일원	668				
변경	소계		중방동697-3일원	0				감)668㎡

라. 도로 및 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지정→편익시설(주차장)		
주차장	• 미지정→ 편익시설(주차장) 지정 A = 668m ²	남매근린공원 내 주차부족 문제해소를 위해 미지정 부지를 주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주차장)로 지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별첨(계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를 경산시청 공원녹지과(053-810-6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고시 제2022-68호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내의 1호·3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산합리 일원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공원 1개소 외 변경없음
 - 1호 근린공원 : 근린공원(생활권공원) → 체육공원(주체공원), A=13,165.3㎡
-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

- 1호 체육공원
 - 도로 및 광장 : 소로3-17호선 외 6개 노선 신설,
소로3-6호선 외 3개 노선 변경,
소로3-9호선 외 1개 노선 폐지
 - 휴양시설 : 시설 2개소 폐지, A=434.7㎡ → 309.3㎡ (감:125.4㎡)
 - 운동시설 : 변경없음
 - 유희시설 : 숲속놀이터 4개소 신설, A=1,670㎡

- 조경시설 : 화단 1개소 신설, $A=30\text{m}^2$
- 녹지시설 : 시설면적 감소, $A=8,505.9\text{m}^2 \rightarrow 6,727.2\text{m}^2$ (감:1,778.7 m^2)
- 3호 근린공원
 - 화장실(편익시설) 위치 이동 : $A=73.3\text{m}^2$ (면적 변경없음)
 - 화장실 건축물 바닥면적 및 연면적 변경 : $A=30.0\text{m}^2 \rightarrow 37.4\text{m}^2$ (증:7.4 m^2)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5. 관계 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와 산림녹지과(054-650-6328)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별첨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 획구역	예천군 호명면 일원	2,082,054.8	-	2,082,054.8	

I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82,054.8	-	2,082,054.8	100.00	
소 계	1,189,686.6	-	1,189,686.6	57.14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일반주거지역	721,143.9	-	721,143.9	34.6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1,124.7	-	101,124.7	4.86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131.3	-	246,131.3	11.8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3,887.9	-	373,887.9	17.96	
	준주거지역	468,542.7	-	468,542.7	22.5	
소계		276,764.2	-	276,764.2	13.29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176,097.6	-	176,097.6	8.46	
	근린상업지역	100,666.6	-	100,666.6	4.83	
소계		615,604.0	-	615,604.0	29.57	
녹지 지역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615,604.0	-	615,604.0	29.57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m ²)	연 장 (m)	폭 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1개소	-	-	636,865.2	-	-		
기 정	1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미관지구	일반미관 지구	예천군 호명면 일원	636,865.2	-	-	경고14-96 (2014.3.1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 계	84	19,375	473,323.3	41	5,434	82,505.1	22	7,903	261,174.0	21	6,038	129,644.2	
일반도로	계	57	17,611	453,643.2	26	4,381	71,957.5	18	7,362	253,058.3	13	5,868	128,627.4
	광로	1	2,766	143,588.7	-	-	-	1	2,766	143,588.7	-	-	-
	대로	8	6,163	179,767.6	-	-	-	3	2,413	73,722.4	5	3,750	106,045.2
	중로	23	6,111	106,694.4	8	2,288	50,545.0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소로	25	2,571	23,592.5	18	2,093	21,412.5	4	52	432.5	3	426	1,747.5
보행자도로	계	27	1,764	19,680.1	15	1,053	10,547.6	4	541	8,115.7	8	170	1,016.8
	중로	4	541	8,115.7	-	-	-	4	541	8,115.7	-	-	-
	소로	23	1,223	11,564.4	15	1,053	10,547.6	-	-	-	8	170	1,016.8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55	주간 선도 로	2,76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88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대로	2	1	30	주간 선도 로	388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3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대로	2	2	30	주간 선도 로	1,263	광로 2-1(예)	대로 3-5(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대로	2	3	30	주간 선도 로	762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21	대로 2-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대로	3	1	28	집산 도로	843	광로 2-1(예)	대로 2-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대로	3	2	28	집산 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대로	3	3	28	집산 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대 로	3	4	28	보조 간선 도로	145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2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대 로	3	5	25	주간 선도 로	352	대로 2-2(예)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4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1	1	21	집산 도로	298	광로 2-1(예)	대로 3-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1	2	21	집산 도로	263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1	3	21	집산 도로	281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1	4	21	집산 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1	5	21	집산 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1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1	6	24	집산 도로	33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02	대로 3-3(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중 로	1	7	20	집산 도로	401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1	8	21	집산 도로	109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1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2	1	16	국지 도로	199	대로 3-1(예)	중로 1-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2	2	16	국지 도로	690	중로 1-1(예)	중로 1-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2	3	16	국지 도로	56	대로 3-1(예)	중로 2-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2	4	16	국지 도로	135	중로 2-2(예)	중로 2-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2	5	16	국지 도로	610	중로 1-2(예)	중로 1-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2	6	16	국지 도로	58	대로 3-2(예)	중로 2-5(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	16	국지 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중로	2	8	16	국지 도로	110	중로 2-5(예)	중로 2-5(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중로	2	9	16	국지 도로	107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중로	2	10	16	국지 도로	106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중로	2	11	15	특수 도로	143	광로 2-1(예)	중로 2-9(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5- 291 (2015.9. 4)	
기정	중로	2	12	15	특수 도로	90	중로 2-9(예)	수변공원 9 (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5- 291 (2015.9. 4)	
기정	중로	2	13	15	특수 도로	203	광로 2-1(예)	중로 2-10(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5- 291 (2015.9. 4)	
기정	중로	2	14	15	특수 도로	105	중로 2-10(예)	수변공원 9 (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5- 291 (2015.9. 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중 로	3	1	13	국지 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3	2	13	국지 도로	176	중로 1-4(예)	중로 1-3(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3	3	12	국지 도로	147	광로 2-1(예)	대로 2-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3	4	12	국지 도로	473	대로 2-2(예)	중로 1-8(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중 로	3	5	12	국지 도로	769	대로 3-4(예)	중로 1-8(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	10	국지 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2	10	국지 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6(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3	10	국지 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1	4	10	국지 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5	10	국지 도로	62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6	10	국지 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7	10	국지 도로	254	소로 1-6(예)	소로 1-6(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8	10	국지 도로	76	소로 1-7(예)	소로 1-7(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9	10	국지 도로	185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0	10	국지 도로	36	중로 3-2(예)	소로 1-9(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1	10	국지 도로	70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1	12	10	국지 도로	36	소로 1-14(예)	소로 1-9(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3	10	국지 도로	89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4	10	국지 도로	143	소로 1-13(예)	소로 1-11(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5	10	국지 도로	201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6	10	국지 도로	341	소로 1-15(예)	소로 1-15(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7	10	국지 도로	158	소로 1-16(예)	소로 1-16(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8	10	국지 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5(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19	10	특수 도로	101	대로 3-2(예)	경관녹지 2 (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1	20	10	특수 도로	144	중로 1-1(예)	중로 2-4(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21	10	특수 도로	100	중로 2-2(예)	중로 2-4(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22	10	특수 도로	50	광로 2-1(예)	중로 2-2(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23	10	특수 도로	65	대로 2-1(예)	중로 2-5(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24	10	특수 도로	64	중로 2-8(예)	중로 2-5(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25	10	특수 도로	55	중로 2-8(예)	광장 2(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26	10	특수 도로	52	중로 1-2(예)	광장 2(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1	27	10	특수 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28	10	특수 도로	41	광로 2-1(예)	중로 3-4(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29	10	특수 도로	37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30	10	특수 도로	36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31	10	특수 도로	148	광로 2-1(예)	근린공원 2 (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1	32	10	특수 도로	112	중로 1-6(예)	소로 1-49(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5- 291 (2015.9. 4)	
기 정	소 로	1	33	10	특수 도로	48	중로 2-13(예)	중로 1-7(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5- 291 (2015.9. 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2	1	8	국지 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1 (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2	2	8	국지 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2 (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2	3	8	국지 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3 (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2	4	8	국지 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4 (예)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3	1	4	국지 도로	100	대로 2-1(예)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8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3	2	4	국지 도로	13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2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2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3	3	4	국지 도로	19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0	일반 도로		경고12- 230 (2012.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3	4	6	특수 도로	25	중로 3-2(예)	대로 3-2(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3	5	6	특수 도로	28	광로 2-1(예)	소로 1-7(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3	6	6	특수 도로	31	광로 2-1(예)	소로 1-16(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3	7	6	특수 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16(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3	8	6	특수 도로	15	중로 1-4(예)	소로 1-16(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3	9	6	특수 도로	16	중로 1-2(예)	소로 1-7(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기 정	소 로	3	10	6	특수 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7(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3	11	6	특수 도로	25	중로 3-1(예)	대로 3-2(예)	보행 자전 용도 로		경고12- 230 (2012.7. 31)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553.5	-	22,553.5		
기정	1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4	2,540.8	-	2,540.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1	2,171.8	-	2,171.8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7	2,000.6	-	2,000.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8	2,868.6	-	2,868.6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77	1,396.7	-	1,396.7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1	3,248.5	-	3,248.5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5	2,396.4	-	2,396.4	경고12-230 (2012.7.3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8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65	1,947.4	-	1,947.4	경고12-230 (2012.7.31)	
기정	9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6	1,876.1	-	1,876.1	경고12-230 (2012.7.31)	
기정	10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6	2,106.6	-	2,106.6	경고12-230 (2012.7.31)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57.3	-	5,457.3		
기정	1	광장	일반 광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4	2,581.5	-	2,581.5	경고12- 230 (2012.7. 31)	
기정	2	광장	일반 광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48	2,875.8	-	2,875.8	경고12- 230 (2012.7. 31)	

2) 공원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7,565.8	-	317,565.8		
소 계					198,052.5	-	198,052.5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예천군 호명면	13,165.3		13,165.3	경고12-230 (2012.7.31)	
변경	1	공원	체육 공원	금능리 747				-	
기정	2	공원	근린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4	56,640.3	-	56,640.3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근린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128,246.9	-	128,246.9	경고12-230 (2012.7.31)	
소 계					750.9	-	750.9		
기정	1	공원	소공 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96	750.9	-	750.9	경고12-230 (2012.7.31)	
소 계					7,890.1	-	7,890.1		
기정	1	공원	어린 이공 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2	1,669.3	-	1,669.3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원	어린 이공 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0	3,145.6	-	3,145.6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어린 이공 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5	3,075.2	-	3,075.2	경고12-230 (2012.7.3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10,872.3	-	110,872.3		
기정	1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6	9,672.9	-	9,672.9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3	5,653.8	-	5,653.8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5	4,724.5	-	4,724.5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8	4,419.8	-	4,419.8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7	8,393.5	-	8,393.5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9	8,055.2	-	8,055.2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0	58,408.5	-	58,408.5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9	5,238.4	-	5,238.4	경고12-230 (2012.7.31)	
기정	9	공원	수변 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8	6,305.7	-	6,305.7	경고12-230 (2012.7.31)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1호 근린공원	공원 변경 13,165.3m ² (면적변경 없음)	공원 시설을 확보를 위한 공원 변경 (숲속놀이터 조성)
	1호 체육공원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758.5	-	114,758.5		
소 계					14,925.6	-	14,925.6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33	439.2	-	439.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41	571.2	-	571.2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6	1,073.4	-	1,073.4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8	927.9	-	927.9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6	3,254.4	-	3,254.4	경고12-230 (2012.7.3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7	1,900.1	-	1,900.1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8	2,741.9	-	2,741.9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녹지	완충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20	4,017.5	-	4,017.5	경고12-230 (2012.7.31)	
소 계					99,832.9	-	99,832.9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6 일원	46,959.0	-	46,959.0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1	35,605.0	-	35,605.0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경관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1	5,091.6	-	5,091.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경관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9	7,280.7	-	7,280.7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7	555.4	-	555.4	경고14-96 (2014.3.1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녹지	경관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3	1,262.6	-	1,262.6	경고14-96 (2014.3.17)	
기정	7	녹지	경관 녹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9	1,551.6	-	1,551.6	경고14-96 (2014.3.17)	
기정	8	녹지	경관 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5	1,527.0	-	1,527.0	경고14-96 (2014.3.17)	

4)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57.4	-	257.4		
기정	1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32	64.2	-	64.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40	64.4	-	6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5	64.0	-	64.0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9	64.8	-	64.8	경고12-230 (2012.7.31)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4.0	-	144.0		
기정	1	전기공 급설비	케이 블헤 드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6	144.0	-	144.0	경고14-96 (2014.3.17)	

2) 공동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공동구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	-	1.9	6,459.7	경고14-96 (2014.3. 17)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858.5	-	40,858.5		
소 계					19,748.0	-	19,748.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 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	19,748.0	-	19,748.0	경고12-230 (2012.7.31)	
소 계					21,110.5	-	21,110.5		
기정	1	학교	고등 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21,110.5	-	21,110.5	경고12-230 (2012.7.31)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7	하천	지방 하천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0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855-28번지선 내성천(국가) 합류점	9.62 (2.37)	25~110 (38)	524,309 (90,188.8)	경고09 -483 (2009. 11.5)	송평 천

※ ()는 사업지구내 포함부분임, 지구내 면적 중 하천7은 도로(3,224.6m²) 포함

2)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493.5		16,493.5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2	3,102.8		3,102.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유수지	저류 시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2	13,390.7		13,390.7	경고12-230 (2012.7.31)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37.9		2,537.9		
기정	1	하수 도	오수 중계 펌프장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0	2,537.9		2,537.9	경고12-230 (2012.7.31)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합 계		48,897.2	160필지	48,897.2	
소 계		18,970.7	61필지	18,970.7	
D-1	1	4,151.6	1	2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98.6	
			3	294.2	
			4	291.0	
			5	300.2	
			6	300.5	
			7	298.9	
			8	298.2	
			9	295.9	
			10	294.1	
			11	288.2	
			12	297.5	
			13	297.5	
			14	297.5	
	2	904.3	1	302.5	
			2	299.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3	1,229.5	3	302.3	
			1	308.0	
			2	306.1	
			3	308.6	
			4	306.8	
	4	1,872.8	1	313.6	
			2	312.7	
			3	311.4	
			4	312.8	
			5	311.4	
			6	310.9	
	5	928.4	1	309.4	
			2	310.1	
			3	308.9	
	D-1	6	973.8	1	
2				324.1	
3				325.5	
7		2,598.9	1	326.0	
			2	325.4	
			3	325.3	
			4	324.1	
			5	325.6	
			6	324.8	
			7	324.5	
			8	323.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8	922.7	1	307.2	
			2	307.2	
			3	308.3	
	9	657.3	1	328.6	
			2	328.7	
	10	2,594.3	1	325.1	
			2	324.8	
			3	325.2	
			4	321.8	
			5	325.2	
			6	324.6	
			7	324.7	
			8	322.9	
	11	623.9	1	311.9	
			2	312.0	
12	598.6	1	300.6		
		2	298.0		
13	914.6	1	306.4		
		2	305.4		
		3	302.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소 계		29,926.5	99필지	29,926.5	
D-2	1	3,118.6	1	310.2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 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 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309.8	
			3	310.0	
			4	309.7	
			5	309.6	
			6	314.7	
			7	313.8	
			8	313.7	
			9	313.6	
			10	313.5	
	2	1,606.5	1	269.5	
			2	267.2	
			3	267.1	
			4	268.8	
			5	267.2	
			6	266.7	
	3	994.0	1	334.6	
			2	329.1	
			3	330.3	
	4	2,424.1	1	299.7	
2			298.2		
3			298.3		
4			297.6		
5			307.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D-2	5	2,172.5	6	307.5			
			7	307.8			
			8	307.2			
			1	272.7			
			2	270.9			
			3	271.6			
			4	271.5			
			5	272.3			
	6	270.8					
	7	271.5					
	8	271.2					
	D-2	6	1,338.2	1		26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 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 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67.7	
3				267.9			
4				268.1			
5				266.8			
7		1,795.6	1	302.1			
			2	301.6			
			3	296.0			
			4	300.2			
			5	300.8			
			6	294.9			
8		920.0	1	306.1			
			2	306.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9	2,596.5	3	307.9	
			1	325.9	
			2	324.2	
			3	324.5	
			4	325.5	
			5	325.2	
			6	323.4	
			7	323.4	
			8	324.4	
	10	2,345.6	1	289.6	
			2	287.3	
			3	287.2	
			4	287.3	
			5	300.3	
			6	298.2	
			7	298.3	
			8	297.4	
	D-2	11	933.3	1	
2				311.6	
3				309.5	
12		621.1	1	311.3	
			2	309.8	
13		2,596.4	1	326.1	
			2	324.3	
			3	324.4	
			4	325.4	
			5	324.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6	323.3	
			7	323.5	
			8	324.7	
	14	2,564.5	1	319.1	
			2	317.4	
			3	317.4	
			4	317.5	
			5	324.4	
			6	323.1	
			7	322.6	
			8	323.0	
	15	1,787.4	1	298.0	
			2	297.4	
			3	298.0	
			4	298.2	
5			298.5		
6			297.3		
16	1,488.0	1	298.9		
		2	298.1		
		3	298.3		
		4	298.3		
		5	294.4		
17	624.2	1	311.6		
		2	312.6		

2.2.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81,865.2	12필지	481,865.2	
B-1	-	82,137.3	1	38,905.1	제3종일 반주거 지역
			3	31,232.2	
			4	12,000.0	
B-2	-	88,447.7	1	46,020.2	제3종일 반주거 지역
			2	42,427.5	
B-3	-	79,372.5	1	79,372.5	제2종일 반주거 지역
B-4	-	59,903.4	1	34,252.6	
			2	25,650.8	
B-5	-	26,535.5	1	26,535.5	제3종일 반주거 지역
B-6	-	55,901.2	1	55,901.2	
B-8	-	89,567.6	1	48,917.3	
			2	40,650.3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2.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1,002.8	18필지	11,002.8	
근생1	-	1,521.5	1	485.8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 병 불허) -획지분할 불허
			2	534.3	
			3	501.4	
근생2	-	1,442.0	1	494.5	
			2	493.0	
			3	454.5	
근생3	-	2,062.2	1	492.2	
			2	523.9	
			3	523.8	
			4	522.3	
근생4	-	1,837.8	1	527.3	
			2	480.9	
			3	465.0	
			4	364.6	
근생9	-	4,139.3	1	1,010.3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획지분할 불허. 단, 근생10은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 준 이상 분할허용
			2	1,071.8	
			3	1,064.3	
			4	992.9	

2.4 상업·업무용지

2.4.1.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56,950.9	42필지	56,950.9	
상1	-	8,255.9	1	1,899.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 용 - 상1(1, 2획지), 상5, 상6은 공동개발 권장
			2	1,724.7	
			3	1,724.1	
			4	1,514.5	
			5	697.0	
			6	696.5	
상2	-	2,156.7	1	2,156.7	
상3	-	4,539.5	1	749.2	
			2	756.1	
			3	1,517.0	
			4	1,517.2	
상4	-	3,549.7	1	1,268.0	
			2	507.6	
			3	508.3	
			4	1,265.8	
상5	-	4,861.4	1	2,014.0	
			2	2,847.4	
상6	-	7,832.8	1	4,138.7	
			2	2,486.0	
			3	1,208.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상7	-	1,688.4	1	844.2	
			2	844.2	
상8	-	5,097.1	1	1,267.0	
			2	1,266.4	
			3	1,265.1	
			4	649.1	
			5	649.5	
상9	-	4,236.3	1	706.1	
			2	708.8	
			3	1,412.8	
			4	1,408.6	
상10	-	3,045.6	1	1,526.3	
			2	1,519.3	
상11	-	6,190.4	1	777.2	
			2	772.8	
			3	1,546.3	
			4	1,547.4	
			5	1,546.7	
상12	-	5,497.1	1	1,375.3	
			2	1,373.9	
			3	1,373.8	
			4	1,374.1	

2.4.2. 특화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5,157.0	31필지	35,157.0	
특상1	-	6,290.9	1	1,231.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범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연접한 2개획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1,277.6	
			3	1,269.1	
			4	1,244.3	
			5	1,268.1	
특상2	-	4,248.9	1	1,091.9	
			2	1,050.5	
			3	1,037.1	
			4	1,069.4	
특상3	-	2,344.7	1	1,189.9	
			2	1,154.8	
특상4	-	3,765.7	1	1,318.4	
			2	1,284.4	
			3	1,162.9	
특상5	-	7,624.8	1	1,025.1	
			2	1,007.4	
			3	1,038.5	
			4	1,078.6	
			5	1,118.5	
			6	1,158.7	
			7	1,198.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특상6	-	3,453.6	1	1,197.6	
			2	1,150.7	
			3	1,105.3	
특상7	-	7,428.4	1	1,030.1	
			2	1,020.7	
			3	1,021.3	
			4	1,034.0	
			5	1,110.5	
			6	1,165.0	
			7	1,046.8	

2.4.3.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19,032.4	68필지	319,032.4	
업1	-	113,042.8	1	87,705.9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단, 업1은 필요시 3회,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 할허용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 용
			2	25,336.9	
업2	-	28,855.6	1	28,855.6	
업3	-	4,431.4	1	2,230.6	
			2	2,200.8	
업4	-	5,742.5	1	2,352.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2	3,390.0	
업5	-	24,560.4	1	11,692.0	
			2	6,810.6	
			3	2,878.4	
			4	3,179.4	
업6	-	5,252.3	1	2,651.7	
			2	2,600.6	
업7	-	13,188.0	1	3,037.9	
			2	3,069.5	
			3	4,294.4	
			4	2,786.2	
업8	-	10,876.1	1	4,158.2	
			2	4,048.7	
			3	1,337.1	
			4	1,332.1	
업9	-	9,978.3	1	4,005.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단, 업1은 필요시 3회,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 할허용
			2	3,748.9	
			3	1,099.7	
			4	1,123.9	
업10	-	5,780.7	1	1,175.3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 용
			2	1,108.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3	3,497.1	
업11	-	5,929.8	1	1,152.9	
			2	1,126.7	
			3	3,650.2	
업12	-	6,543.9	1	2,163.2	
			2	2,202.8	
			3	2,177.9	
업13	-	12,494.7	1	12,494.7	
업14	-	13,465.0	1	6,727.5	
			2	6,737.5	
업15	-	12,418.2	1	2,274.5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 용
			2	2,000.2	
			3	3,518.9	
			4	2,332.3	
			5	2,292.3	
업16	-	12,599.1	1	3,285.2	
			2	4,611.7	
			3	2,369.9	
			4	2,332.3	
업17	-	3,182.5	1	784.6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 용
			2	792.9	
			3	793.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4	811.6	
업18	-	3,180.5	1	815.2	
			2	793.7	
			3	792.6	
			4	779.0	
업19	-	6,025.1	1	2,948.3	
			2	1,542.5	
			3	1,534.3	
업20	-	7,698.2	1	2,706.2	
			2	2,385.8	
			3	1,285.0	
			4	1,321.2	
업21	-	2,712.8	1	2,712.8	
업22	-	2,589.2	1	1,286.8	
			2	1,302.4	
업23	-	5,435.6	1	2,724.8	
			2	2,710.8	
업24	-	3,049.7	1	1,513.7	
			2	1,536.0	

2.5.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2.5.1. 교육시설

2.5.1.1. 유치원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²)	
계			3,271.5	2필지	3,271.5	
기정	유1	-	1,345.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	1,345.5	
기정	유9	-	1,926.0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9	1,926.0	

2.5.1.2. 초등학교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계		19,748.0	1필지	19,748.0	
기정	초1	-	19,748.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	19,748.0	

2.5.1.3. 고등학교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계		21,110.5	1필지	21,110.5	
기정	고1	-	21,110.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21,110.5	

2.5.2. 교육시설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계		42,646.1	2필지	42,646.1	
기정	문2	-	20,249.3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	20,249.3	
기정	문3	-	22,396.8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	22,396.8	

2.5.3.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계		22,553.5	10필지	22,553.5	
주1	-	2,540.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4	2,540.8	
주2	-	2,171.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1	2,171.8	
주3	-	2,000.6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7	2,000.6	
주4	-	2,868.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8	2,868.6	
주5	-	1,396.7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77	1,396.7	
주6	-	3,248.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1	3,248.5	
주7	-	2,396.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5	2,396.4	
주13	-	1,947.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65	1,947.4	
주14	-	1,876.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6	1,876.1	
주15	-	2,106.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6	2,106.6	

2.5.4. 주유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317.8	1필지	2,317.8	
주유1	-	2,317.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89	2,317.8	

2.5.5.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537.9	1필지	2,537.9	
오1	-	2,537.9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0	2,537.9	

2.5.6. 전기공급설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44.0	1필지	144.0	
전1	-	144.0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6	144.0	케이블 헤드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점포겸용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최고높이 : 13m이하)	
		허용 가구수	•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계획시 4가구 이하)	
		기타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지하층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1층 : 주거 또는 교육용도 외 허용되는 모든 시설. (단, 욕실 및 취사시설이 없는 취미실, 서재 등의 설치 허용) - 지하2층 이하 : 기계실 및 주차용도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전체를 기계실 및 주차용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타용도의 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치를 금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해 허용하되, 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를 불허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필로티는 타용도로 일체 전환할 수 없다. •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전체를 높이 2.5m 이하의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용적률 및 최고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단독주택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주택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점용 단독주택 건축물의 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지붕으로 계획 시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평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평지붕 구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지붕형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관적으로 주변의 경사지붕과 조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지붕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 한옥주택의 경우,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한식지붕에는 전통경관형성 및 지붕틀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 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단,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대문,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문 설치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공원에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한옥 주택의 경우 한국전통디자인을 포함하는 담장으로 조성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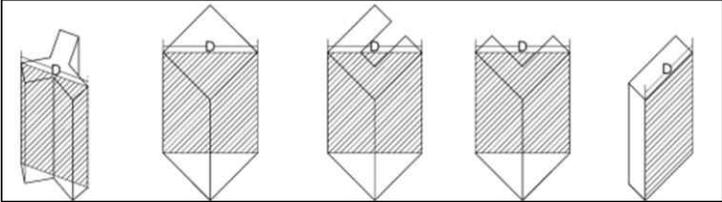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가로형간판 또는 소형돌출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다. - 도청사 주변의 단독주택 용지는 자연재료 사용 및 주상호 한글 표기를 권장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 - 차량 진 ·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 · 출입구는 획지 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원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예외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필지당 2대 이상’ 과 관련 시·군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관련 시·군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용도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으로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는 「주차장법」 및 관련 시·군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 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B1~ B6, B8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조업소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단, B1-1-4에 한함]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나-2>에 따른다. 	
		용적률		
		높이		
		주택규모 및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획지별 주택규모는<별표 3-나-2>를 따른다. 각 획지별 세대수는 <별표 3-나-2>를 초과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3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4항’의 지침을 따른다.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주거동 배치”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6항’ 의 지침을 따른다. • “통경구간”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 제1항’ 의 지침을 따른다. • “차경축”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 제2항’ 의 지침을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획지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또는 “어귀마당” 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 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나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아파트 (제2종 일반주 거지역,	B1~ B6, B8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 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높이의 2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옹벽 인접 주거동 조성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사이에는 6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 2층 이하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주거동의 길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 (이하 '건축물의 길이' 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축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주거동 길이 산정 예시도(D=건축물의 길이)〉</p>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 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층의 호수 및 주거동 길이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 부분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 11층 이상 : 4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 11층 이상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거동 길이제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거동 길이 적용 예시></p>  </div> </div>
<p>아파트 (제2종 일반주 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p>	<p>B1~ B6, B8</p>	<p>형태 및 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의 입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대주택단지는 8호) 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의 규정을 따른다. <p>•지붕의 형태 및 높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릉지형을 활용한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담장, 대문, 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투시형 담장과 생울타리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결정도상에 지정된 어귀마당의 진입부 및 연도형 배치구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p>아파트 (제2종 일반주 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p>	<p>B1~ B6, B8</p>	<p>대지내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 내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주요 오픈스페이스와 주변 공원녹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차경축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와 자유로운 연계를 위하여 결정도의 차경축의 선형을 참고하여 시점부와 종점부가 서로 연결되도록 조성한다. • 결정도에 별도의 차경축이 지정되지 않은 블록 내 획지의 경우에는 단지와 단지 및 공원녹지와의 소통을 위하여 “어귀마당”, “단지 내 보행출입구” 및 인접 공원녹지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1개 이상 조성한다. • 공공보행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어귀마당”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2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교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 진 ·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치한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아파트 (제2종 일반주 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B1~ B6, B8	교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지상 주차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네트 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경축”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5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장 제1편 제14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4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 ※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공동주택은 연속적인 층수변화를 통하여 지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수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별표 3-나-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

필지 번호	구분	획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 주택 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 률(%)	비고
합계	기정			548,550.5	9,803					
A-1	기정	1	60㎡이하	22,279.9	499	82	18	40	190	임대 (최고 층수)
B-1	기정	1	60㎡~85㎡ 이하	38,905.1	764	112	22	40	220	임대
		3	60㎡~85㎡ 이하	31,232.2	613	112	22	40	220	
		4	60㎡이하	12,000.0	500	65	22	40	220	공공주택 (행복 주택)
B-2	기정	1	60㎡~85㎡ 이하	46,020.2	780	112	18	40	190	
		2	60㎡~85㎡ 이하	42,427.5	719	112	18	40	190	
B-3	기정	1	60㎡~85㎡ 이하	79,372.5	1,133	112	15	40	160	
B-4	기정	1	60㎡~85㎡ 이하	34,252.6	489	112	15	40	160	
		2	60㎡~85㎡ 이하	25,650.8	366	112	15	40	160	
B-5	기정	1	60㎡~85㎡ 이하	26,535.5	450	112	18	40	190	

필지번호	구분	획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주택규모 (㎡)	평균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B-6	기정	1	60㎡~85㎡ 이하	55,901.2	1,098	112	22	40	220	
B-7	기정	1	60㎡~85㎡ 이하	44,405.4	873	112	22	40	220	임대
B-8	기정	1	60㎡~85㎡ 이하	48,917.3	830	112	18	40	190	
		2	60㎡~85㎡ 이하	40,650.3	689	112	18	40	190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 거지역)	근생 1~4, 근생9	용 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 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의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 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 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 의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의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 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 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2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	•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
			• 1층의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해당블록	• 근생 1~8	• 근생 9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근생1~4, 근생9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용주 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근생11~13)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의 설치 시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 거 지역, 제1종 전용주 거지역)	근생1~ 4, 근생9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내에 수목을 활용한 차폐를 고려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체는 가급적 전면보도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과 특수성이 있는 포장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 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 당 1개소만 허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라. 상업업무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상1~1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1~4, 상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5~6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층수 20층 이하 (최고높이 : 85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고높이 : 65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층수 3층 이상 상업지 중앙부 녹지축방향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 자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특화상업 시설 (근린상업 지역)	특상1~ 특상7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부 보행친화형용도(카페·베이커리 등 식품시설, 서적·기념품·의류 등 소매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최고높이 : 22m 이하)
일반업무시 설 (준주거 지역)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 4~5 업16~2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	• 업무시설
			기타	•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블록		•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공공업무시설 (준주거지역)	업1~2, 업4-2, 업5, 업13, 업15-1~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내지 마목,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이전기관의 업무시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업무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내지 아목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한다.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1~2, 업4-2, 업5, 업13, 업15-1~3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상1~ 상12 업1~ 업24 특상1~ 특상7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에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 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 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대문,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상업시설 업무시설	상1~ 상12 업1~ 업24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특화 상업시설	특상1~ 특상7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 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시설용지 중 상1(1, 2획지), 상5, 상6, 상10, 상12(3, 4획지)는 광로변 전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 업무용지2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공업무시설 : 20% 이상 [단, 제2행정타운(업1~업24) 내 업무시설은 30% 이상으로 하고, 업무용지2 내에 임상양호지를 존치하여 생태면적률에 포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교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유1, 9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및 학원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 한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 4층 이하 	
		학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초1 고1	용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자연녹지 지역)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4층 이하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 학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자연녹지 지역)	유1, 9 / 초1, 고1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은 현란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운동장은 인근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유치원 :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2) 문화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시설 (일반 상업 지역)	문2~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건축물 1층부는 공공지원기능 및 라운지·카페 등 시민에게 개방된 보행친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8층 이하(최고높이 : 40m이하) 	

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시설 운수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6~7 (일반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5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0%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층 이하 (최고높이:27m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 (최고높이:15m이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시설 운수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1~4 (준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13~15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 300% 이하	• 25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 고층수 5층 이하 (최고높이:23m이하)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 수 4층 이하 (최고높이:19m이하)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4) 주유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자연녹 지지역)	주유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고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5) 기타시설용지

2.5.6.1. 우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우수중계 펌프장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오1	용도	허용	우수중계펌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2.5.6.1. 오전기공급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기공급 시설 (자연녹지 지역)	전기1	용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구분	구성기준
공공 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 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보행출입구” 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폭의 범위 내에서 이동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구분	구성기준
보행자 우선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우선구조” 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해당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1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구분	구성기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학교시설은 결정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구분	조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각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구분	조성기준
	<p>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 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첨2〉 예천 군관리계획(1호 체육공원) 결정(변경)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예천1)	공원	근린공원	호명면 금능리 747번지	13,165.3	-	13,165.3	경고12 -230 (2012. 7.31)	
변경	1 (예천1)	공원	체육공원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1호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변경 A=13,165.3m² (면적변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어 공원 조성목적에 맞춰 유형변경
	1호 체육공원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계	13,165.3	13,165.3	4,659.4	6,438.1	-	-	-	156	217		
기 반 시 설	소 계	1,388.8	1,592.9	1,388.8	1,592.9	-	-	-	16	16	
	도 로	713.4	917.5	713.4	917.5	-	-	-	-	-	
	광 장	675.4	675.4	675.4	675.4	-	-	-	16	16	
휴 양 시 설	434.7	309.3	434.7	309.3	-	-	-	20	14		
운 동 시 설	2,774.3	2,774.3	2,774.3	2,774.3	-	-	-	35	35		
관 리 시 설	61.6	61.6	61.6	61.6	-	-	-	2	2		
유 희 시 설	-	1,670.0	-	1,670.0	-	-	-	-	49		
조 경 시 설	-	30.0	-	30.0	-	-	-	-	1		
녹 지	8,505.9	6,727.2	-	-	-	-	-	83	100		
공원시설율 (법정 50%이하)	6,438.1 / 13,165.3 x 100 = 48.9%										
공원건폐율 (법정 20%이하)	-										

나. 세부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합 계				13,165.3	13,165.3	4,659.4	6,438.1					156	217	
기 반 시 설	소 계			1,388.8	1,592.9	1,388.8	1,592.9					16	16	
	도 로		전지역	713.4	917.5	713.4	917.5					-	-	
	광장		3개소	675.4	675.4	675.4	675.4					16	16	
	공정의 마당	1-1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227.3	227.3	227.3	227.3							
	교감의 마당	1-2		210.5	210.5	210.5	210.5							
	자아의 마당	1-3		237.6	237.6	237.6	237.6							
	앞음벽											4	4	
	파고라"A"											1	1	
	자전거 보관대											1	1	
	평의자											2	2	
수목보호 판											8	8		
휴 양 시 설	소 계		1개소	434.7	309.3	434.7	309.3					20	14	
	휴게쉼터	2-1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309.3	309.3	309.3	309.3							
		2-2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87.0	-	87.0	-							
		2-3	예천군 호명면	38.4	-	38.4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금능리 747											
	앞음벽											2	2	
	파고라"A"											2	2	
	평의자											4	4	
	등의자											6	-	
	음수대											1	1	
	허리 돌리기 운동											1	1	
	양다리 운동											1	1	
	윗몸일으 키기운동											1	1	
	등허리 근육풀기 운동											1	1	
	옆파도 타기운동											1	1	
	소 계		4개소	2,774.3	2,774.3	2,774.3	2,774.3					35	35	
운동 시설	족구장	3-1	에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528.2	528.2	528.2	528.2							
	테니스장	3-4		748.7	748.7	748.7	748.7							
	테니스장	3-5		748.7	748.7	748.7	748.7							
	테니스장	3-6		748.7	748.7	748.7	748.7							
	가벽											1	1	
	앞음벽											2	2	
	등의자											16	16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메쉬웬스											4	4		
	출입문											4	4		
	족구지주											1	1		
	테니스 지주											3	3		
	족구네트											1	1		
	테니스 네트											3	3		
관리 시설	소계	2개소		61.6	61.6	61.6	61.6					2	2		
	관리동	4-1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52.5	52.5	52.5	52.5								
	화장실	4-2		9.1	9.1	9.1	9.1								
	컨테이너 관리실											1	1		
	간이 화장실											1	1		
유희 시설	소계	4개소		-	1,670.0	-	1,670.0					-	49		
	숲속 놀이터	5-1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	970.0	-	970.0								
		5-2		-	205.0	-	205.0								
		5-3		-	445.0	-	445.0								
		5-4		-	50.0	-	50.0								
	짚와이어 놀이대											-	1		
네트 오르기											-	1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통나무 다리 건너기											-	1	
	트램폴린											-	2	
	2인그네											-	1	
유 희 시 설	복합 놀이대											-	1	
	인디언집											-	2	
	황토 놀이터											-	1	
	통나무 원형 의자											-	30	
	목재옷 걸이A											-	1	
	목재옷 걸이B											-	1	
	통나무 벤치											-	5	
	등의자											-	2	
조 경 시 설	소계	1개소		-	30.0	-	30.0					-	1	
	화단	6-1	예천군 호명면 747	-	30.0	-	30.0					-	1	
녹 지	녹 지		전지역	8,505.9	6,727.2	-	-					83	100	
	종합 안내판											1	1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자전거 보관대											6	6	
	통나무 벤치											-	3	
	등의자											-	14	
	디딤돌"A"											76	76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폐지, 변경 및 신설 A = 713.4㎡ → 917.5㎡ (증:2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내 숲속놀이터 조성 및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노선 폐지와 일부 노선 변경 및 신설
2-2	-	휴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폐지 A = 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시설 폐지
2-3	-	휴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폐지 A = 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시설 폐지
-	5-1	유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신설 A = 9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속놀이터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	5-2	유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신설 A = 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속놀이터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	5-3	유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신설 A = 4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속놀이터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신설 A = 5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속놀이터 조성에 따른 시설 신설
-	6-1	조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신설 A = 3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내 화단 조성
-	-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 면적 변경 A = 8,505.9m² → 6,727.2m² (감:1,778.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시설의 변경 및 시설 신설에 따른 녹지 면적 변경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7개소			474.8	713.4				
변경		12개소			610.0	917.5				
기정	소로	3	6	1.5	123.9	185.8	산책로	금능리 747	소로3-8	
변경	소로	3	6	1.5	17.0	26.0	산책로	금능리 747	소로3-7	선형변경, 노선단축
기정	소로	3	7	1.5	156.9	235.4	산책로	소로3-6	소로3-8	
변경	소로	3	7	1.5	270.0	404.0	산책로	-	-	선형변경, 노선연장
기정	소로	3	8	1.5	113.4	170.1	산책로	공정의마당 1-1	소로3-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소로	3	8	1.5	22.0	33.0	산책로	공정의마당 1-1	소로3-7	선형변경, 노선단축
폐지	소로	3	9	1.5	44.6	66.9	산책로	소로3-7	소로3-8	폐지
기정	소로	3	14	1.0	11.0	16.5	연결로	휴양시설 2-1	화장실	
기정	소로	3	15	1.5	20.0	30.2	연결로	자아의마당 1-3	소로3-7	
변경	소로	3	15	1.5	21.0	32.0	산책로	자아의마당 1-3	소로3-7	선형변경, 노선연장
폐지	소로	3	16	1.5	5.0	8.5	연결로	금능리 744	소로3-7	폐지
신설	소로	3	17	1.5	17.0	25.0	산책로	금능리 747	소로3-7	신설
신설	소로	3	18	1.5	92.0	138.0	산책로	소로3-7	소로3-7	신설
신설	소로	3	19	1.5	35.0	52.0	산책로	소로3-7	소로3-18	신설
신설	소로	3	20	1.5	67.0	100.0	산책로	소로3-18	소로3-19	신설
신설	소로	3	21	1.5	28.0	42.0	산책로	소로3-18	소로3-20	신설
신설	소로	3	22	1.5	24.0	36.0	산책로	소로3-7	소로3-20	신설
신설	소로	3	23	2.3	6.0	13.0	산책로	금능리 747	소로3-15	신설

〈별첨3〉 예천 군관리계획(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예천3)	공원	근린공원	호명면 산합리 1396번지	128,246.9	-	128,246.9	경고12 -230 (2012. 7.31)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 (m ²)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 (동)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8,246.9	128,246.9	8,145.5	8,145.5	1	1	30.0	37.4	30.0	37.4	409	409		
기 반 시 설	소 계	3,799.9	3,799.9	3,799.9	3,799.9	-	-	-	-	-	-	2	2	
	도 로	3,799.9	3,799.9	3,799.9	3,799.9	-	-	-	-	-	-	2	2	
휴 양 시 설	105.2	105.2	105.2	105.2	-	-	-	-	-	-	10	10		
교 양 시 설	623.0	623.0	623.0	623.0	-	-	-	-	-	-	29	29		
편 익 시 설	212.4	212.4	212.4	212.4	1	1	30.0	37.4	30.0	37.4	4	4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관 리 시 설	105.0	105.0	105.0	105.0	-	-	-	-	-	-	-	-	
유 희 시 설	3,300.0	3,300.0	3,300.0	3,300.0	-	-	-	-	-	-	12	12	
녹 지	120,101.4	120,101.4	-	-	-	-	-	-	-	-	352	352	
공원시설률 (법정40% 이하)	기정		8,145.5 / 128,246.9 × 100 = 6.3%										
공원건폐율 (법정10% 이하)	기정		30.0 / 128,246.9 × 100 = 0.02%										
	변경		37.4 / 128,246.9 × 100 = 0.03%										

나. 세부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28,246.9	128,246.9	8,145.5	8,145.5			30.0	37.4	30.0	37.4	409	409	
기 반 시 설	소 계			3,799.9	3,799.9	3,799.9	3,799.9							2	2	
	도 로		전지역	3,799.9	3,799.9	3,779.9	3,779.9									
	가 벽													2	2	
휴 양 시 설	소 계			105.2	105.2	105.2	105.2							10	10	
	휴 계 쉼 터	4개소		105.2	105.2	105.2	105.2									
		1-1	예천군 호명면	15.3	15.3	15.3	15.3									
		1-2	산합리 1396	34.3	34.3	34.3	34.3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3		21.3	21.3	21.3	21.3											
		1-4		34.3	34.3	34.3	34.3											
	앞음벽													4	4			
	파고라"B"													2	2			
	허리 돌리기 운동													1	1			
	양다리 운동													1	1			
	옆파도타기 운동													1	1			
노젓기 운동													1	1				
소 계				623.0	623.0	623.0	623.0							29	29			
교양 시설	생태연못	2-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272.9	272.9	272.9	272.9											
	야생 식물원	2-2		146.9	146.9	146.9	146.9											
	희귀 식물원	2-3		203.2	203.2	203.2	203.2											
	플랜터													2	2			
	앞음벽													4	4			
	파고라"B"													1	1			
	마라톤 운동													1	1			
	역기내리기 운동													1	1			
	교양	역기올리기 운동												1	1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시설	등허리 근육 풀기운동													1	1			
	원그리기 운동													1	1			
	평의자													2	2			
	수목 보호판													6	6			
	햇대"A"													5	5			
	햇대"B"													4	4			
편의시설	소 계			212.4	212.4	212.4	212.4							4	4			
	테 크 전망대	5개소		139.1	139.1	139.1	139.1								1	1		
		3-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16.4	16.4	16.4	16.4											
		3-2		50.3	50.3	50.3	50.3											
		3-3		20.7	20.7	20.7	20.7											
		3-4		17.5	17.5	17.5	17.5											
		3-5		34.2	34.2	34.2	34.2											
	3-6	73.3		73.3	73.3	73.3	판넬	1	30.0	37.4	30.0	37.4	1	1				
	사각정자													1	1			
	평의자													1	1			
	정화조													1	1			
관리시설	소계			105.0	105.0	105.0	105.0											
	수로관	5개소		105.0	105.0	105.0	105.0											
		4-1	예천군 호명면	58.9	58.9	58.9	58.9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2	산합리 1396	7.8	7.8	7.8	7.8											
		4-3		5.5	5.5	5.5	5.5											
		4-4		19.9	19.9	19.9	19.9											
		4-5		12.9	12.9	12.9	12.9											
	소 계			3,300.0	3,300.0	3,300.0	3,300.0							12	12			
유 희 시 설	숲속 놀이터	5-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	3,300.0	3,300.0	3,300.0	3,300.0											
	목교													1	1			
	파고라													1	1			
	휴게데크													1	1			
	스카이 워크													1	1			
	짚라인													1	1			
	놀이시설													7	7			
녹 지	녹지		전지역	120,101.4	120,101.4									352	352			
	육각정자													1	1			
	트래리스													14	14			
	종합 안내판													1	1			
	등의자													10	10			
	피크닉 테이블"A"													3	3			
	통나무 세우기													2	2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통나무더미												4	4		
	돌무더기												2	2		
	디딤돌"A"												24	24		
	디딤돌"B"												225	225		
	디딤목"B"												66	66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	이동식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이동 A = 73.3㎡ • 건축물 면적 변경 A = 30.0㎡ → 37.4㎡ (증: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이용객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위치 이동 및 건축물 면적 변경

다. 도로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433.0	3,799.9				
기정	소로	3	1	3.3	29.1	96.0	진입로	산합리 1396	산합리 1396	
기정	소로	3	2	3.3	8.4	27.8	진입로	산합리 1396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3	2.8	5.1	14.3	진입로	산합리 1396	소로 3-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4	2.8	4.9	13.8	연결로	소로 3-1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5	2.8	12.7	35.5	진입로	산합리 1396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6	2.3	31.6	72.7	연결로	희귀식물원 2-3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7	2.3	14.2	32.7	진입로	산합리 1396	산합리 1396	
기정	소로	3	8	1.5	86.6	129.9	산책로	소로 3-12	희귀식물원 2-3	
기정	소로	3	9	1.5	474.3	711.8	산책로	진입테크 3-1	산합리 1396	
기정	소로	3	10	1.5	225.8	348.7	산책로	휴게쉼터 1-4	소로 3-9	
기정	소로	3	11	1.5	168.5	252.7	산책로	산합리 1396	소로 3-9	
기정	소로	3	12	1.5	669.5	1,004.2	산책로	산합리 1396	소로 3-9	
기정	소로	3	13	1.5	204.5	306.8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2	
기정	소로	3	14	1.5	275.6	415.1	산책로	산합리 1396	소로 3-12	
기정	소로	3	15	1.5	130.9	199.8	산책로	소로 3-11	소로 3-9	
기정	소로	3	16	1.5	91.3	138.1	산책로	소로 3-13	소로 3-14	

봉화군 고시 제2022-104호

봉화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지내 봉화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봉 화 군 수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31-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칭 : 내성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규모 : 1,254m²

가. 도로(소로3-82호선) : B=6.0m, L=75m, A=497m²

나. 주차장 조성 A=75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나. 성명 : 봉화군수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붙임과 같음

※ 관계서류 및 도면은 봉화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054-679-6422, 도면게재 생략)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28필지			10,800	1,254					
1	봉화읍 내성리	231- 111	대	40	6	봉화군				
2	봉화읍 내성리	231- 82	대	145	118	봉화군				
3	봉화읍 내성리	231- 24	대	285	2	김*희	봉화군 봉*읍 내*리			
4	봉화읍 내성리	231- 112	대	2	1	봉화군				
5	봉화읍 내성리	231- 115	대	17	15	봉화군				
6	봉화읍 내성리	231- 107	대	65	62	봉화군				
7	봉화읍 내성리	231- 101	도	34	9	봉화군				
8	봉화읍 내성리	231- 102	대	64	64	봉화군				
9	봉화읍 내성리	231- 17	대	102	88	봉화군				
10	봉화읍 내성리	225- 1	대	162	162	봉화군				
11	봉화읍 내성리	228- 30	대	28	28	봉화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2	봉화읍 내성리	228- 20	대	25	25	봉화군				
13	봉화읍 내성리	223- 11	대	43	39	봉화군				
14	봉화읍 내성리	223- 9	대	102	102	봉화군				
15	봉화읍 내성리	223- 1	대	170	3	임*자	봉화군 봉*읍 예*로			
16	봉화읍 내성리	231- 116	대	7	7	봉화군				
17	봉화읍 내성리	231- 65	대	53	45	봉화군				
18	봉화읍 내성리	231- 19	대	24	21	봉화군				
19	봉화읍 내성리	225- 3	대	43	32	손*영	봉화군 봉*읍 포*리			
20	봉화읍 내성리	225- 9	대	20	18	봉화군				
21	봉화읍 내성리	225- 10	대	6	6	봉화군				
22	봉화읍 내성리	228- 21	대	4	4	봉화군				
23	봉화읍 내성리	223- 16	대	11	11	봉화군				
24	봉화읍 내성리	223- 18	대	3	3	봉화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25	봉화읍 내성리	223- 3	대	68	68	봉화군				
26	봉화읍 내성리	223- 17	대	6	6	봉화군				
27	봉화읍 내성리	223- 4	대	354	266	봉화군				
28	봉화읍 내성리	511	도	8,917	43	국 (국토교 통부)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 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봉화읍 내성리	223- 11	대	주택	목조기와지붕	36.78	m ²	봉화군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9.97	m ²	봉화군				
				화장실 및 창고	블럭조	1.00	식	봉화군				
				대문	철제, 문주 및 계단포함	1.00	식	봉화군				
				바닥	벽돌 및 콘크리트	1.00	식	봉화군				
2	봉화읍 내성리	225- 1	대	주택	목조기와 위 강판지붕	82.06	m ²	봉화군				
				화장실 및 창고	블럭조 슬라브지붕	1.00	식	봉화군				
				욕실	블럭조 슬라브지붕	1.00	식	봉화군				
				비가림 시설	렉산	1.00	식	봉화군				
				비가림 시설	렉산	1.00	식	봉화군				
				대문	철제, 문주 등 포함	1.00	식	봉화군				
				화단	자연석	1.00	식	봉화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바닥 포장	콘크리트	1.00	식	봉화군				
				엄나무	R20	1.00	식	봉화군				
3	봉화읍 내성리	225-1, 231-50	대	점포	블럭조 슬라브지붕	32.34	m ²	봉화군				
				주택	블럭조스레트 지붕계단포함	11.25	m ²	봉화군				
				가추	파이프 스투트지붕	1.00	식	봉화군				
4	봉화읍 내성리	231-102	대	점포	목조기와위 정크판넬지붕	48.00	m ²	봉화군				
				창고 및 보일러실	스레트지붕	1.00	식	봉화군				
5	봉화읍 내성리	231-17	대	점포	블록 및 벽돌슬라브위 강판지붕	69.60	m ²	봉화군				
				보일러실	목조강판지붕	1.00	식	봉화군				
6	봉화읍 내성리	231-65	대	점포	블록 및 판넬조 강판지붕	49.30	m ²	봉화군				

봉화군 고시 제2022-105호

봉화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문화시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지내 봉화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문화시설) 시행을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봉 화 군 수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나. 명칭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조성사업

3. 사업규모 : 9,074.21㎡

가. 봉화교육지원청 건축 : 2,877.74㎡(연면적 5,141.3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2

나. 성명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붙임과 같음

※ 관계서류 및 도면은 봉화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054-679-6422, 도면계재 생략)

[붙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6필지			19,291	9,074.21	-	-	-	-	-
1	봉화읍 해저리	30	학	9,667	4,104.24	경상북도 교육감	-	-	-	-
2	봉화읍 해저리	32-1	답	58	27.59	경상북도 교육감	-	-	-	-
3	봉화읍 해저리	36	학	8,369	4,506.40	경상북도 교육감	-	-	-	-
4	봉화읍 해저리	36-6	학	16	16	경상북도 교육감	-	-	-	-
5	봉화읍 해저리	1111 -18	학	1,174	412.98	경상북도 교육감	-	-	-	-
6	봉화읍 해저리	1112 -5	대	7	7	국 (기획재정부)	-	-	-	-

봉화군 고시 제2022-106호

봉화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지내 봉화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체육시설)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 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봉 화 군 수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체육시설)
 - 나. 명칭 : 군청사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규모 : 내부도로 및 주차장 조성 577㎡

(단위 : m²)

구분	합계	건축	주차장	도로	경관시설지	녹지	체육시설
공공 청사	62,751	4,932	기정 6,058 변경 6,118	기정 6,445 변경 6,773	29,255	기정 16,061 변경 15,673	-
체육 시설	47,169	574	8,369	기정 2,384 변경 2,573	기정 5,732 변경 5,543	6,851	23,25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소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나. 성명 : 봉화군수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불임과 같음

※ 관계서류 및 도면은 봉화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054-679-6422, 도면계재 생략)

[붙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2필지			65,299	577	-	-	-	-	-
1	봉화읍 내성리	537	대	57,783	200	봉화군	-	-	-	-
2	봉화읍 해저리	18-2	체	7,516	377	봉화군	-	-	-	-



시 군

공 고

안동시 공고 제2022-1444호

안동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용상동 1517-4번지 외 1필지 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안 동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17-4번지 외 7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 명 칭 : 안동 하나어린이집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결정면적 : 4,749m²
- 금회 사업시행면적 : 1,582m²

1) 공사현황

가. 토 공 - 흙깎기-2,784m³, 흙쌓기-926m³, 터파기-1,360m³, 되메우기-974m³

나. 배수공 - PE이중벽관: (D400)L=10.0m,(D300)L=626.0m(D150) L=157.0m

관보호공: (D400)L=10.0m,(D300)L=626.0m(D150) L=157.0m

우수집수정, L형 측구, PE흙통받이: 1식, PE빗물받이:1식

트렌치측구, 스틸배수로, 원형수로관, 우수집수정,

다. 구조물공 - 빗물이용시설 1식

라. 포장공 - 아스콘포장 A=1,914m²

마. 부대공 - 화강경계석, 주차라인, 주차블럭, 장애인 표지판 1식

바. 조경공 - 포장공 1식, 식재공 1식, 구조물공 1식

사. 건축공 - 어린이집(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1식

연면적 : 531.90m², 건축면적 : 312.5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5.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3. 0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등기부상)	비고
	동					주소	성명		
계				1,582	1,582				
1	용상	1517-4	전	1,563	1,563	공	안동시		
2	용상	1517-307	전	19	19	국	통계청		

II. 관계도서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여성가족과, 용상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5402), 여성가족과(☎054-840-527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공고 제2022-1348호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

구미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구 미 시 장

1. 등록 및 폐기 연월일 : 2022. 7. 18.

2. 등록 및 폐기 사유 : 공인 사고(분실)

3. 공인명(인영)

구분	등록 공인		폐기(분실) 공인	
	공인명	인영	공인명	인영
개각	구미시옥성 자연휴양림 수입금출납원인		구미시옥성자연휴양 림 수입금출납원인	

청도군 공고 제2022-999호

청도 군계획시설사업(고수제5어린이공원)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청도 군계획시설사업(고수제5어린이공원) 실시계획 승인 인가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청 도 군 수

1. 공람(열람)기간 : 2022. 7. 18. ~ 8. 1.(14일간)

2.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

- 종 류 : 공간시설:어린이공원

-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039-137번지 일원
- 면 적 : 5,568m²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년간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 성 명 : 청도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 붙임과 같음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비치 및 공람장소 : 청도군청 도시과
- 의견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내
- 의견제 출 처 : 청도군청 도시과

6.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청 도시과 (054-370-6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고수제5어린이공원)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예상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자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계	5,568						
1	청도읍 고수리	1039- 82	천	248	247	-	국 (건설부)	대구 동구 신천동 556-1 신천주공아 파트 106동 806호	박종봉	점유권	
2	청도읍 고수리	1039- 137	천	3,598	3,598	-	국 (건설부)	청도읍 청화로 200	황수만	점유권	
								대구 동구 신천동 556-1 신천주공아 파트 106동 806호	박종봉		
3	청도읍 고수리	1039- 81	천	1,487	1,089	-	국 (건설부)	청도읍 청화로 200	황수만	점유권	
4	청도읍 고수리	1039- 86	천	2,745	389	-	국 (건설부)	대구 동구 신천동 556-1 신천주공아 파트 106동 806호	박종봉	점유권	
5	청도읍 고수리	1039- 1	천	167,508	245	-	국 (건설부)				



기 타

공 고

구미소방서 공고 제2022-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납부 통지서」 공시송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거주불명)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비협조적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구 미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22. 7. 18.(월) ~ 2022. 7. 31.(일) (2주간)
2. **납부대상** : 이 ○ 홍
3. **송달내역** : 과태료 납부 통지서

4. 납부방법

- 1) 납부방법 : 농협은행 「구.농협중앙회, 인터넷(www.wetax.go.kr , www.giro.or.kr)
- 2) 전자납부번호 : 47000-22251-00009-2149

5. 과태료 내역

회계연도	부과번호	납기일자	과태료 금액
2022	제2022-3호	2022. 8. 1.	금515,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00, 0동 000호(삼성동, 00빌라)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제2항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지연 보고(1개월이상 3개월미만) 		

6. 유의사항

가. 상기 이의제기 제출일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기한 내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다음 각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1)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3%) 및 증가산금(매월 1.2%) 부과
- 2)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4)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다. 과태료를 고지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 054-440-0143)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납 부 기 한	2022. 8. 1.	납 부 금 액	515,000원 (금오십일만오천원)
위 반 자	상 호 (대표자)	OO골드 (이 O 흥)	생년월일 1900.00.0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OO, OO빌라 O동 000호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지연 보고(1개월이상 3개월미만)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산출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2. 개별기준 파목 2)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2022년 8월 1일까지** 은행, 인터넷(www.giro.or.kr) 에 붙임 OCR카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3.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다음 각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3%), 증가산금(매월 1.2%) 부과
 -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2022년 7월 13일

경상북도 구미소방서 징수관

경상북도 경주소방서 공고 제2022-8호

「위험물 주유취급소 시정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 한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에게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주유취급소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주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22. 7. 18. ~ 2022. 8. 1.(15일간)
2. **처분제목** : 위험물 주유취급소 시정명령 처분

3. 처분내용

대상자	주소	주유취급소		위반 및 시정명령 사항
		상 호	위 치	
장*찬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로 **-1	팔공 주유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반*대로 2**9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부재 -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설치 필요 2. 사무실 출입문 설치기준 부적정 - 사무실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 가능한 구조 및 자동폐쇄식 구조로 변경 필요 3. 좌측 및 후면 방화담 일부 무너진 상태 - 방화담 복구 필요

4. 시정명령 이행기간 : 2022. 8. 2. ~ 2022. 9. 5.(35일간)

5.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6. 처분원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 위반

7. 기타사항

- 대상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778-0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경주소방서 공고 제2022-9호

「위험물 주유취급소 사용정지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위험물 주유취급소 위험물 시설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에게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위험물 주유취급소 사용정지 처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경 주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22. 7. 18. ~ 2022. 8. 1.(15일간)
2. **처분제목** : 위험물 주유취급소 사용정지 처분

3. 처분내용

대상자	주소	주유취급소		처분내용
		상 호	위 치	
장*찬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로 **-1	팔공 주유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반*대로 2**9	○ 주유취급소 사용정지처분 15일간 (2022. 8. 2. ~ 2022. 8. 16.)

4.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5. 처분원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위반(위험물 주유취급소 위험물시설
시정명령 불이행)

6. 기타사항

- 위 사용정지처분 기간 만료후에도 시정명령 이행 완료시 까지 주유취급소 사용 정지처분이 연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778-0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복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  **세상**